성주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11년 4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제5항의 겸직금지 규정 등과 관련하여 성주군 군의회 의원의 위촉규정이 있는 자치법규 중 법령에 위배되는 규정에 대하여 일부규정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제5항(겸직 등 금지) 의원 겸직 금지규정에 따라 “군의원 1명” 삭제(안 제5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제5항(겸직 등 금지)

나. 관련공문 : 기획감사실-5253(2010.10.24) 각종위원회 군의회 의원 위촉관련 자치법규 검토의견서 통지

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(2) 입법예고 : 생략(성주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)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, 예술업무담당과장, 지휘자, 단원 중 2명과 기타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운영위원회) ①·② (생 략)	제5조(운영위원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위원장은 단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, 위원은 군의원 1명, 예술업무담당과장, 지휘자, 단원 중 2명과 기타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. (2004.7.16 개정)	**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, 위원은 예술업무담당과장, 지휘자, 단원 중 2명과 기타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.**
④ ~ ⑨ (생 략)	④ ~ ⑨ (현행과 같음)